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과 천 시 의 회

목 차

1. 운 영 기 간	2
2. 심 사 대 상 기 관	2
3. 특 별 위 원 회 구 성	2
4. 심 사 일 정 및 장 소	3
5. 의 결 사 항	4
6. 참 고 사 항	5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1. 운영기간

○ 기 간 : 2017년 6월 8일 ~ 6월 13일 (6일간)

2. 심사 대상기관

○ 시 본청 18개 실·과·단, 보건소, 3개 사업소, 6개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3. 특별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윤미현 의원

○ 간 사 : 제갈임주 의원

○ 위 원 : 문봉선 의원, 안 영 의원, 고금란 의원, 이수진 의원

○ 사무보조직원

전	문	위	원	김	종	우
전	문	위	원	김	기	태
지	방	행	정	7	문	수
속		기		사	이	해
속		기		사	안	영

4. 심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 상 부 서	장 소	비 고
2017. 6. 8. (목) (10 : 30)	< 운 영 계 획 서 채 택 > 세 무 과 기 획 감 사 실 주 민 생 활 지 원 실 안 전 총 괄 담 당 관 도 시 사 업 단 도 시 정 책 과	의회 3층 특 위 장	제1차 특위
2017. 6. 9. (금) (10 : 00)	사 회 복 지 과 건 축 통 과 교 린 민 원 과 열 설 과 건 설 과 교 육 청 소 년 과	"	제2차 특위
2017. 6. 12. (월) (10 : 00)	문 화 체 육 과 환 경 위 생 과 산 업 경 제 과 정 보 통 신 과 회 계 과 총 무 과	"	제3차 특위
2017. 6. 13. (화) (10 : 00)	6 개 동 주 민 센 터 보 건 소 정 보 과 학 도 서 관 맑 은 물 사 업 소 환 경 사 업 소 시 설 관 리 공 단 < 결 과 보 고 서 채 택 >	"	제4차 특위

5. 의결사항

연번	의안번호	부 의 안 건	특위 의결일	의결결과
1	2017-25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7. 6. 13.	원안 가결
2	2017-26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7. 6. 13.	원안 가결
3	2017-27	과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 정비 조례안	2017. 6. 13.	원안 가결
4	2017-28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7. 6. 13.	원안 가결
5	2017-29	과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7. 6. 13.	수정 가결
6	2017-30	과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 6. 13.	원안 가결
7	2017-31	과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017. 6. 13.	수정 가결
8	2017-32	과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17. 6. 13.	원안 가결
9	2017-33	과천시 소방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2017. 6. 13.	원안 가결
10	2017-34	과천시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017. 6. 13.	원안 가결
11	2017-35	과천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7. 6. 13.	원안 가결
12	2017-36	과천시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17. 6. 13.	원안 가결
13	2017-37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 6. 13.	수정 가결
14	2017-38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 6. 13.	원안 가결
15	2017-39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 6. 13.	원안 가결
16	2017-40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 6. 13.	원안 가결
17	2017-41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 6. 13.	원안 가결
18	2017-42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 6. 13.	원안 가결

6. 참고사항

과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017 - 29
----------	-----------

제출연월일 : 2017. 6. 14.

발의자 : 결산 및 조례심사특위 위원장

1. 수정이유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정의 부분 확대 등을 통하여 보다 많은 기업과 법인·단체 등을 지원하고자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임.

2. 수정내용

안 제2조제3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안 제3조부터 제25조까지를 제4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하고, 안 제17조제2항(종전 안 제16조제2항)의 본문 중 “위원장은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른다.

1. 조직의 사회적 가치 실현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 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 역량 강화
3. 자발성에 기초한 사람중심의 민주적 공동체 활동 촉진
4. 개인과 공동체의 개성과 다양성의 존중
5. 지속가능한 호혜적 참여경제의 촉진
6.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경제 공동체 구현

3.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신 · 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1. ~ 2. (생략) 3.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 사. (생략) <u><신 설></u>	제2조(정의) 1. ~ 2. (현행과 같음) 3. ----- -----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u>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u>
<u><신 설></u>	<u>제3조(기본원칙)</u>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른다. 1. <u>조직의 사회적 가치 실현</u> 2. <u>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 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 역량 강화</u> 3. <u>자발성에 기초한 사람중심의 민주적 공동체 활동 촉진</u> 4. <u>개인과 공동체의 개성과 다양성의 존중</u> 5. <u>지속가능한 호혜적 참여경제의 촉진</u> 6. <u>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경제 공동체 구현</u>

신 · 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u>제3조 ~ 제15조</u> <u>제16조(구성)</u>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 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 ⑥ (생 략) <u>제17조 ~ 제25조</u>	<u>제4조 ~ 제16조</u> <u>제17조(구성)</u>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한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u>제18조 ~ 제26조</u>

※ 기재하지 않은 조항들은 집행부 원안 내용과 동일

과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017 - 31
----------	-----------

제출연월일 : 2017. 6. 14.

발의자 : 결산 및 조례심사특위 위원장

1. 수정이유

공동위원장을 시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임.

2. 수정내용

안 제3조제2항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를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과 부시장으로 한다.” 로 한다.

3.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신 · 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구성) ① (생 략) ② <u>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u> <u>부시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u> <u>민간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u> <u>는 사람이 된다.</u> ③ ~ ⑥ (생 략)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u>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u> <u>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u> <u>중에서 호선된 위원과 부시장으</u> <u>로 한다.</u> ③ ~ ⑥ (현행과 같음)

※ 기재하지 않은 조항들은 집행부 원안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017 - 37
----------	-----------

제출연월일 : 2017. 6. 14.

발의자 : 결산 및 조례심사특위 위원장

1. 수정이유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임.

2. 수정내용

안 제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② 공원시설 시용허가의 우선순위는 관내거주자, 신청자 순으로 한다.

제2항은 제3항으로 한다.

안 제11조2제1항의 본문 중 “헬스, 탁구, 체육프로그램 및 육상장 트랙을” 을 “그 체육시설의 일부를” 로 한다.

3.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공원·공원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① (생 략) <u><신 설></u> ② (생 략)	제8조(공원·공원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공원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관내거주자, 신청자 순으로 한다.</u>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2(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 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이 있는 경우 <u>헬스, 탁구, 체육프로그램 및 육상장 트랙을</u>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1조2(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 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이 있는 경우 <u>그 체육시설의 일부를</u>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